

質問 : 정소년수련원 및 수련소의 시설비 산출기초는 ?

答辯 : 서윤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소년수련원(회관) 및 정소년수련소의 시설부대비 산출기초는 몇 %를 적용하였는가에 대하여는

1. 정소년수련원(회관) 시설부대비는

'92. 예산편성지침 및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산출되었음

○ 감리용역비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 동법시행령제56조 규정(직접인건비, 간접경비, 보상비포함)에 의거
- 256,510,000 원

○ 시설공사 계약수수료는 조달기금법제7조, 동법시행령제8조 규정에의거 체감조정방식에 의거 산출
- 22,030,000 원

○ 기타 부대비는 '92 예산편성지침 제3종을 적용.0.2 % 22,000,000 원과 기공식준비금5,000,000 원을 계상 27,000,000 원 산출하였으나 예산부서 사정시 1,100,000 원으로 조정

○ 전기안전수수료는 전기사업법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7조및제58조 규정에 의거 1,000Kw 이상 사용시 선임자의 상주 월정수수료 12,000,000 원 계상.

※ 정소년수련원(회관) 부대비산출설명서 및 참고자료

2. 정소년수련소(수련마을) 실시실계 부대비는 '92. 예산편성지침 시설부대비의 요율표에 의거 2.6 %을 적용하였으며
-2,530,000,000 원x2.6 % = 65,780,000 원

※ '92 예산편성지침 시설부대비 건설부문 요율표

청소년수련원 (회관) 부대비 산출설명서

1. 감리용역비 산출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 동시행령제50조 규정에 의거 시공감리대상 공사로서 기술용역대가 기준(실비보상 가산방식)에 의거 책임감리자1명, 건축감리, 기계감리, 토목감리, 조경감리 각각 1명씩 공사기간 2년으로 산출하였음.

2. 시설공사계약 수수료 산출근거는 ?

조달기금법제7조, 동시행령제8조에의거 공사금액에 따라 체감 적용하였음.

3. 기타부대비 산출근거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사비 110억원일경우에 0.2%이므로 $110\text{억원} \times 0.002 = 22,000,000\text{원}$ 이나 청소년회관 신축공사 기공식행사에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참석이 예상되므로 위의 산출금액외에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하여 2,700만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예산부서 사정시 1,1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4. 전기관리 수수료 산출근거는 ?

전기사업법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7조 및 58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였음.

1) 감리용역비

○ 기술용역대가 기준 (실비보상 가산방식)

※ 공사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 동시행령제57조 규정
- 시공 감리대상)

1. 직접인건비

구 분	등급	인원수	일 수	단 가	금 액	비 고
책임감리자	특급	1	720	83,500	60,120,000	
건축감리	중급	1	720	48,000	34,560,000	
기계감리	"	1	720	48,000	34,560,000	
토목감리	"	1	360	48,000	17,280,000	
조경감리	"	1	360	48,000	17,280,000	
계					163,800,000	

2. 직접경비

구 분	인원	내 용	월수	금 액	비 고
현장체제비	3	120,000 x 3	24	8,640,000	
	2	120,000 x 2	12	2,880,000	
중 식 비	3	60,000 x 3	24	4,320,000	
	2	60,000 x 2	12	1,440,000	
차량유지비	1	200,000 x 1	24	4,800,000	
여직원급료	1	400,000 x 1	24	9,600,000	
도서인쇄비		300,000	24	7,200,000	
현장운영비		262,000	24	6,288,000	
통신비		200,000	24	4,800,000	
계				50,148,000	

3. 간접비 : 직접인건비의 100% = 163,800,000원

4. 보상비 : (1 + 2) × 19.9% = 213,948,000 × 0.199
= 42,562,000원

계 (1 + 2 + 4) = 256,510,000원

2) 시설공사 계약 수수료

5억 × 0.004 = 2,000,000

10억 × 0.003 = 3,000,000

30억 × 0.002 = 6,000,000

65억 × 0.001 = 6,500,000

관급자재수수료 = 4,530,000

계 22,030,000

3) 기타부대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10억 공사에 대하여

(1) 110억원 × 0.002 = 22,000,000

(2) 청소년회관 신축공사 기공식 행사에 체육청소년부장관참석
= 5,000,000

(1) + (2) = 27,000,000

4)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 전기사업법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57조 및
58조 규정에 의거 - 12,000,000

(3) 건축부분의 요율

종별	건축물의 종류	1,000㎡이하	1,000㎡이상 3,000㎡이하	3,000㎡이상 5,000㎡이하	5,000㎡이상	1억 2억	
1	단독주택(면적 85㎡미만), 기밀건축물(신교사항의 경우), 작업장(공장이외의 작업장), 창고시설(면적 100㎡이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폐차장으로 기계시설을 요하지 않은것), 동물관련시설(설비를 요하지 않는 간단한 축사)	설계부분	1.08	0.94	0.89	0.80	0.66
		기 본 설계	2.69	2.34	2.22	2.0	1.65
2	다세대주택(면적 165㎡미만), 공동주택(세대당 85㎡미만), 기숙사, 인근생활시설, 뉴욕차시설, 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 시설강습소), 운 동시설(인근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업무시설(6층미만, 5,000㎡미만),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공장(일반공장으로서 면적 1,000㎡미만), 창고 시설(화역장, 일반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제1종 제외), 동물관련시설(가축시장), 동물(연돌, 용벽, 고가수조 등) 인근공공시설	설계부분	1.43	1.29	1.24	1.15	0.96
		기 본 설계	3.57	3.21	3.09	2.86	2.40
3	단독주택(면적 165㎡이상), 다세대주택(면적 165㎡~330㎡이하), 공동주택(세대당 85㎡~165㎡미만), 창고시설(면적 1,000㎡미만, 사설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제2종 제외)	설계부분	1.2	1.2	1.2	1.2	1.0
		기 본 설계	8.33	7.62	7.38	6.92	5.79
* 제 2 종 시설로서 동기조와 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 3 종을 적용		계	8.33	7.62	7.38	6.92	5.79
3	단독주택(면적 165㎡이상), 다세대주택(면적 165㎡~330㎡이하), 공동주택(세대당 85㎡~165㎡미만), 창고시설(면적 1,000㎡미만, 사설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제2종 제외)	설계부분	1.56	1.42	1.37	1.28	1.09
		기 본 설계	3.93	3.57	3.46	3.23	2.76
* 제 2 종 시설로서 동기조와 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 3 종을 적용		계	3.93	3.57	3.46	3.23	2.76

3억	5억	10억	20억	30억	50억	75억	100억	150억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1,500억	2,000억 이상
0.47	0.41	0.34	0.29	0.27										
1.19	1.03	0.84	0.72	0.67										
0.71	0.61	0.50	0.43	0.41										
0.8	0.7	0.5	0.4	0.3										
3.17	2.75	2.18	1.84	1.65										
0.77	0.70	0.58	0.48	0.44	0.41	0.37	0.36	0.36	0.35	0.35	0.35	0.33	0.30	0.30
1.94	1.75	1.46	1.32	1.20	1.10	1.02	0.93	0.92	0.90	0.89	0.87	0.83	0.76	0.75
1.15	1.05	0.87	0.78	0.71	0.65	0.60	0.55	0.54	0.53	0.52	0.51	0.49	0.45	0.44
0.8	0.7	0.5	0.4	0.3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4.66	4.20	3.41	2.98	2.65	2.36	2.19	2.04	2.02	1.98	1.96	1.93	1.85	1.71	1.69
0.92	0.84	0.72	0.66	0.61	0.59	0.56	0.52	0.50	0.50	0.49	0.48	0.48	0.47	0.46
2.33	2.10	1.81	1.68	1.56	1.49	1.41	1.32	1.28	1.26	1.25	1.23	1.20	1.18	1.16

17. 건설공사비 (건설, 통신, 건축)

가. 시설부대비

(1) 건설부문의 효율

공사비	요율 (%)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기타부대	
1 천만원 까지	2.50	7.60	3.73	1.2	15.03
2 천만원 까지	2.11	6.46	3.16	1.2	12.93
3 천만원 까지	1.94	5.95	2.92	1.2	12.01
5 천만원 까지	1.75	5.35	2.63	1.2	10.93
1 억원 까지	1.64	5.03	2.47	1.0	10.14
2 억원 까지	1.30	4.01	1.96	0.8	8.07
3 억원 까지	1.20	3.66	1.80	0.8	7.46
5 억원 까지	1.08	3.33	1.64	0.8	6.85
10 억원 까지	0.96	2.93	1.45	0.7	6.04
20 억원 까지	0.88	2.70	1.33	0.4	5.31
30 억원 까지	0.85	2.60	1.28	0.4	5.13
50 억원 까지	0.83	2.55	1.26	0.3	4.94
100 억원 까지	0.81	2.50	1.23	0.28	4.82
200 억원 까지	0.79	2.42	1.19	0.25	4.65
300 억원 까지	0.78	2.40	1.18	0.25	4.61
500 억원 까지	0.77	2.34	1.16	0.25	4.52
1,000억 원 까지	0.76	2.31	1.13	0.25	4.45